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30100457]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3년 06월 07일]

[www.seedhotalk.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년 02월 18일]

씨앗호떡

정보공개서

[(주)에스엔인더스트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 1544-9552]

[가맹본부의 대표 팩스번호 : 02-448-955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 070-4077-386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씨앗호떡 외2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11.04	2010.11.06	이상준	1544-9552	02-448-9552
	법인등록번호	110111-4464717	사업자등록번호	105-87-5108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성명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이사	이상준	씨앗호떡 외 2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이상준	1544-9552	02-448-955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 이사	최민정	씨앗호떡 외 2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이상준	1544-9552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상준	02-448-9552	02-448-9552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 ·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씨앗호떡] 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씨앗호떡	-
상 호	씨앗호떡 OO점	-
상표(서비스표)	어反感 씨앗호떡 부산떡볶이	등록번호 41-0356260-0000 (2016.04.18.)
광 고	씨앗호떡 부산떡볶이	-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294,545	290,935	3,609	1,768,041	-56,342	-36,345
2022년	388,998	349,042	39,955	2,029,468	-62,394	-34,025
2021년	391,121	317,140	73,980	1,458,041	8,562	15,553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꿀빼닭강정], [복고다방], [씨앗호떡] 등 3개 브랜드의 외식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별 또는 영업표지별로 그 매출액 분류 및 산정이 어려워 그 합계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매출액 중에는 [씨앗호떡]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외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경력	
			년도	경력내용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상준	대표 이사	2010.11.04~현재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최민정	사내 이사	2021.01.20~현재	(주)에스엔인더스트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1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2.04.~현재	꿀빼닭강정(등록번호: 20120100661)이라는 브랜드의 치킨업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3.05.~현재	씨앗호떡(등록번호: 20130100457)이라는 브랜드의 분식업종 경영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가맹 사업 경영	2015.08.~현재	복고다방(등록번호: 20151018)브랜드의 커피업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일자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씨앗호떡 <small>분식업체이</small>	상표권 (43류)	2016.04.18. 등록	등록번호 41-0356260-0000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2026.04.18.

※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 (1) 귀하의 가맹점소재지에서 위 상표가 표시된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 및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권리
- (2)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위 상표를 이용하여 식품점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 (3) 귀하의 가맹점소재지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 (4) 기타 당사의 서면 동의를 얻은 상표의 사용권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씨앗호떡]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13년 5월 27일

2. 해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씨앗호떡	이상준	2013년 5월 ~2014.08.18.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1길 19 3층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씨앗호떡	이상준	2014.08.19. ~2015.11.27.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1 (상수동, BR엘리텔A동 402호)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씨앗호떡	이상준	2015.11.27. ~2021.01.1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705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차)
(주)에스엔 인더스트리	씨앗호떡	이상준	2021.01.20. ~현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10층 1003호 (구로동, 대릉포스트타워2차)

3. [씨앗호떡]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씨앗호떡	분식	호떡, 떡볶이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씨앗호떡]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4		3	3		3	3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	-		-	-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3	3		2	2		2	2	
강원	-	-		-	-		-	-	
충북	-	-		-	-		-	-	
충남	1	1		1	1		1	1	
전북	1	1		-	-		-	-	
전남	-	-		-	-		-	-	
경북	-	-		-	-		-	-	

경남	3	3		-	-		-	-	
제주	-	-		-	-		-	-	

5. 최근 3년간 [씨앗호떡]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4	0	0	0	0	4
2022	4	0	0	1	0	3
2023	3	0	0	0	0	3

6. [씨앗호떡]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씨앗호떡]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씨앗호떡	20130100457	분식	4/0	3/0	3/0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꿀빼닭강정	20120100661	치킨	26/0	20/0	21/0
가맹본부	(주)에스엔인더스트리	복고다방	20151018	커피	34/1	48/1	47/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씨앗호떡] 가맹점은 실제 가맹점 관리에서 당사가 POS와 회계보고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가 차지하는 물류 공급의 비중도 적고 불규칙이어서 대부분 외주 위탁사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씨앗호떡]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년	3	2,762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씨앗호떡]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씨앗호떡]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씨앗호떡] 가맹사업 외에 [꿀빼닭강정], [복고다방], 가맹사업도 경영하나 영업표지별로 광고비 및 판촉비를 분류하기가 어려워 그 합계액을 기재하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01~12	54,544	54,544		
광고	(비공개)	2023.01~12	(비공개)	(비공개)		

당사에서 [2023년]에 [씨앗호떡] 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는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기 어려워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의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 은행 잠실역 지점	기업서비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7	02) 3434-0211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영업점 : 본인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예치
- 인터넷뱅킹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가맹금예치금 예치
- 인터넷뱅킹메뉴 : 은행홈페이지-기업서비스-가맹금예치제도-가맹점사업자-가맹금예치
- 「가맹금예치금」 예치내역 조회 : 가맹점사업자가 인터넷뱅킹으로 본인이 예치한 가맹금예치 금 내용 확인 가능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 횡령 ·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씨앗호떡]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①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내용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시	상호·상표 사용의 대가(5,500)	해지 시	계약 기간 경과에 따라 반환
			영업지역 보장의 대가(5,500)	해지 시	계약 기간 경과에 따라 반환
교육비	2,200	계약 체결 시	교육 훈련비	개시 전	교육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소멸성)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의 잔존 채무를 제외하고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규제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시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를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금 일천오백이십만원(₩15,200,000)(VAT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15,200
가맹비	11,0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VAT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IV-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약 26.4m²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39,250		-	-	-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15,400	1,925	계약 체결 시	시공 전 계약취소	추가 평당 1,760
간판 및 외장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3,850		자체 계약	시공 전 계약취소	-
집기설비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15,000	1,875	계약 체결 시	설치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5,000		납품 후 즉시	입고 전 계약취소	-

(단위 : 천원, VAT포함, 약 49.6m²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 ² 당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 계	-	49,150		-	-	-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24,750	1,650	계약 체결 시	시공 전 계약취소	추가 평당 1,760
간판 및 외장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4,400		자체 계약	시공 전 계약취소	-
집기설비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15,000	1,000	계약 체결 시	설치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	가맹본부 또는	5,000		납품 후 즉시	입고 전 계약취소	-

	협력업체				
--	------	--	--	--	--

- ※ 냉난방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도면면적에 따라 실측 후 산정)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협력업체는 추후 선정 예정입니다.
- ※ 귀하가 당사 또는 지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추가로 지급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입지선정에 있어 가맹본부에 의뢰할 시 별도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가 점포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제한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을 것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종업원	제한 없음	만19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요함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씨앗호떡]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만원	다음 달 5일	반환되지 않습니다.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1)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2)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협의하여 결정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전	교체·보수한 후에는 반환 불가	-
교육 및 훈련 비용	가맹본부			VIII-2 참고		-
광고 및 판촉 비용	가맹본부			V-8 참고		-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1 참고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월계속 가맹금 의 지급기한 을 경과 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제3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류를 공급하는 관계로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구분 (기준: 2023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1)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간판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구체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재고관리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에 관하여 감독	가맹본부의 요청시	문의 (070-4077-3865)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맹금은 계약 잔여기간에 대한 해당 부분(월할계산)과 교육비 금 이백이십만 원(₩2,200,000)(VAT포함) 입니다.

※ 가맹점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주가 부담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씨앗호떡]을 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자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① 귀하가 [씨앗호떡]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자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별첨2]와 같습니다.
- ② 귀하께서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귀하가 [씨앗호떡]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은 [별첨3]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상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씨앗호떡]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2) 당사는 [씨앗호떡]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씨앗호떡 아이스크림 호떡 야채호떡	당사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품목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판매가격의 결정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언)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권장가격(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5. 참조	별첨 5. 참조	서면 통보 등	-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호떡류를 판매하는 업종 및 동일업종의 가맹사업	씨앗호떡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반경 1km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합의를 하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합의 여부 회신 - 합의 결과를 토대로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른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씨앗호떡]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씨앗호떡]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배달앱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제5조 제1항 상의 가맹점 주소지 및 영업지역을 영업거점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배달앱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본부는 배달앱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비중 산정 불가	-	-	-

※ 가맹점의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정확한 산정이 어렵습니다.

※ 당사의 [씨앗호떡] 브랜드에 대한 오프라인 판매액 비중(직영점 없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전용상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가맹계약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 2년
- 재계약시 계약기간(재계약 시작일로부터) : 2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계약서 제6조 제4항)

- ☞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적으로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재계약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합니다.
- ☞ 가맹본부가 상기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 제6조 제2항).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제6조 제5항 각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2)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계약서 제36조 각항)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의 위반事實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2회 이상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또는 가맹본부에게 허위의 사실을 통보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씨앗호떡』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 평가표의 평가치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기준이 3개월간 3회 이상 위반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제조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공급대금을 지체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업체로부터 받은 상품을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 고객 판매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자점 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3일 이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개점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그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및 매출에 관련된 통지나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②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계약서 제45조 제2항)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 제정·개정에 따른 경우 : 사전 통보 및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 서면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맺고 있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5일 전에 가맹본부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맹본부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당사의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잔여 기간 해당 부분(월 할계산)과 교육비 금 이백이십만원(₩2,200,000)(VAT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양수인은 전항에 따른 기간을 경과한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양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및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원칙으로는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씨앗호떡]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호떡류를 판매하는 업종 및 동일업종의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 6 일 이상 개점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연속 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게 휴업하기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유가 정당할 시 가맹본부는 승인합니다.

가맹점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종업원 수는 1~2 명(10평 기준)이며,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에 의합니다.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 · 감독하는지와 관리 · 감독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상품 취급 여부, 제품의 보관상태, 조리 및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자신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영업표지 이미지 제작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및 행사	브랜드,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광고 직전분기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당사에서 광고의 세부사항 결정 →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당사에 광고 시행 전 7일 이내 분담금 납부 → 광고 시행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팜플렛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멤버쉽 포인트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가맹점사업자 50% 이상(광고)/ 70% 이상(판촉)이 시행 여부 및 주요 내용에 찬성하는 광고 및 판촉의 경우에는, 귀하는 반드시 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와 당사가 광고 및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① 귀하는 **『씨앗호떡』**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 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단독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활동의 범위가 자기의 영업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 하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 ①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1.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해당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②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당사가 대여하는 운영매뉴얼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 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가맹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당사는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가맹계약 제19조(비밀유지 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 등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의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VAT포함/33㎡ 기준)

구 분	내 용	기 간	비 용
합계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목록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가맹점 개설 승인	1일	-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및 기타비용 입금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가맹금 예치	-가맹비 및 교육비 예치	계약서 작성 후 즉시	-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	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2일	
인테리어 공사	-인테리어 공사 실시 -공사 완료 후 집기 입고	약 5일	
교육실시	-개점 전 교육 실시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 병행)	2일	-
오픈 전 점검	각종 인허가 종업원 모집 기타 오픈 준비 (가 오픈)	3일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즉시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 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

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종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지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부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기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을 두었으나 현재 판매촉진에 관한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

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사업본부 070-4077 -3865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사업본부 070-4077 -3865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씨앗호떡]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씨앗호떡]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메뉴 레시피 교육, 점포 운영 및 판매서비스 교육	개별 교육 집단 강의 실습 교육	개점 전	필수 교육
수시교육	운영상 필요한 부분 및 신상품 출시에 따른 교육	개별 교육 집단 강의	교육실시 전	시행시 이수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 교육	교육실시 전	필요시 이수
재교육	부족한 교육의 재교육	개별 교육	교육실시 전	필요시 이수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씨앗호떡]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2일 이상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시행시 실비부담	시행시 이수
특별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필요시 실비부담	필요시 이수
재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필요시 실비부담	필요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당사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상품공급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주요 설비 품목의 거래형태>

(2024년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주요 품목의 거래형태>

(2024년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주요 품목의 공급가의 상·하한>

(2024년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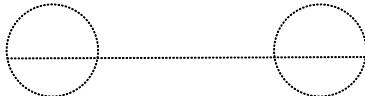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 및 권장 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결 츠 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사업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문)

본인은 『(주)에스엔인터스트리』로부터 꿀빼닭강정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포함)를 제 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년 월 일 시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장소 :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람 :

4.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주)에스엔인터스트리 대표이사 이상준 (인)	수 령 자 : _____ (인) 생년월일 : _____ -
------------------------------------	-------------------------------------